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한규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689

발의연월일: 2024. 6. 20.

발 의 자:김한규・이원택・한준호

박홍배 • 이재관 • 안태준

신정훈 • 모경종 • 문대림

이용우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가맹점사업자단체가 가맹본부에 거래조건 협의를 요청한경우, 가맹본부는 성실하게 협의에 응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이를 위반한 경우 제재할 방법이 없는 상황임. 아울러, 가맹본부와가맹점주 간 상당수의 분쟁이 대화를 통해 해결이 가능함에도 가맹본부가 정당한 사유 없이 협의를 거부하거나 게을리하고 있어 대화조차되지 않고 있음.

이에, 가맹점사업자단체의 거래조건 협의 요청 시 가맹본부가 정당한 사유 없이 협의를 거부하지 못하도록 하고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이를 통해 가맹점사업자단체와 가맹본부간의 갈등으로 인한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감소시키고, 가맹점사업자단체와 가맹본부의 자단체와 가맹본부의 거래조건 협의를 활성화하고, 가맹점주의 권익향상을 통한 공정한 가맹사업 거래질서를 확립하고자 함.

또한, 가맹점사업자단체가 가맹본부에 협의를 요청할 경우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단체의 정체성·대표성을 부정하거나 가맹점사업자들을 억압하며 무력화시키는 경우가 대다수임. 아울러, 가맹점사업자단체에 대한 감독기관의 신고·수리 절차 등이 없어 객관적으로 증명할방법이 없는 상황임.

이에, 가맹점사업자단체를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소속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하도록 하여 해당 가맹점사업자단체의 설립을 공적으로 확인하고자 함(안 제14조의2, 제14조의3 신설, 제33조 및 제35조).

법률 제 호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2제2항 중 "가맹점사업자단체는"을 "가맹점사업자단체는 제14조의3제1항에 따라 등록된 경우"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성실하게 협의에 응하여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협의를 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14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14조의3(가맹점사업자단체의 등록) ①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구성된 가맹점사업자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 ② 가맹점사업자단체는 제1항에 따라 등록한 내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 이 내에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에게 기재사항의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 ③ 공정거래위원회 및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등록한 가맹점사업자단체의 등록사실을 가맹본부에 즉시 알려야 한다.
 - ④ 그 밖에 가맹점사업자단체의 등록, 변경등록,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3조제1항 중 "제14조의2제5항"을 "제14조의2제3항·제5항"으로 한다.

제35조제1항 본문 중 "제14조의2제5항"을 "제14조의2제3항·제5항"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가맹점사업자단체 등록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구성되어 있는 가맹점사업자단체에도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4조의2(가맹점사업자단체의	제14조의2(가맹점사업자단체의
구성 등)	구성 등)
① (생 략)	① (생 략)
② 특정 가맹본부와 가맹계약	2
을 체결・유지하고 있는 가맹	
점사업자(복수의 영업표지를	
보유한 가맹본부와 계약 중인	
가맹점사업자의 경우에는 동일	
한 영업표지를 사용하는 가맹	
점사업자로 한정한다)로만 구	
성된 <u>가맹점사업자단체는</u> 그	가맹점사업자단체는 제1
가맹본부에 대하여 가맹계약의	4조의3제1항에 따라 등록된 경
변경 등 거래조건(이하 이 조	<u> </u>
에서 "거래조건"이라 한다)에	
대한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협의를 요청	3
받은 경우 가맹본부는 <u>성실하</u>	<u>대통령령으</u>
게 협의에 응하여야 한다. 다	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만, 복수의 가맹점사업자단체	한 협의를 하여야 한다
가 협의를 요청할 경우 가맹본	
부는 다수의 가맹점사업자로	
구성된 가맹점사업자단체와 우	
선적으로 협의한다.	

④・⑤ (생략)

<신 설>

한다.

④·⑤ (생 략)

제14조의3(가맹점사업자단체의 등록) ① 제14조의2제1항에 따 라 구성된 가맹점사업자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 라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 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가맹점사업자단체는 제1항 에 따라 등록한 내용 중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 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 이내에 공정거래 위원회 또는 시·도지사에게

③ 공정거래위원회 및 시·도 지사는 제1항에 따라 등록한 가맹점사업자단체의 등록사실 을 가맹본부에 즉시 알려야 한 다.

기재사항의 변경등록을 하여야

④ 그 밖에 가맹점사업자단체 의 등록, 변경등록, 방법 및 절 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3조(시정조치) ① 공정거래위 제33조(시정조치) ① ------

원회는 제6조의5제1항 · 제4항, 제7조제3항, 제9조제1항, 제10 조제1항, 제11조제1항 · 제2항, 제12조제1항, 제12조의2제1항 • 제2항, 제12조의3제1항 · 제2항, 제12조의4, 제12조의5, 제12조 의6제1항, 제14조의2제5항, 제1 5조의2제3항ㆍ제6항을 위반한 가맹본부에 대하여 가맹금의 예치, 정보공개서등의 제공, 점 포환경개선 비용의 지급, 가맹 금 반환, 위반행위의 중지, 위 반내용의 시정을 위한 필요한 계획 또는 행위의 보고 그 밖 에 위반행위의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②·③ (생 략)

제35조(과징금) ① 공정거래위원 회는 제6조의5제1항·제4항, 제 7조제3항, 제9조제1항, 제10조 제1항, 제11조제1항·제2항, 제 12조제1항, 제12조의2제1항·제 2항, 제12조의3제1항·제2항, 제12조의4, 제12조의5, 제12조 의6제1항, <u>제14조의2제5항</u>, 제1 5조의2제3항·제6항을 위반한

가맹본부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영업수익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100분의 2를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그 위반행위를 한 가맹본부가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5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인 ~ ⑥ (생 략)

<u>.</u>
② ~ ⑥ (현행과 같음)